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성주군 농어업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군수 및 농어업인, 농어업관련단체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적 명시(안 제4조 및 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

나. 예산조치 : '15년 예산에 54억원 반영되었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6. 8 ~ 6. 29.)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:「여성농업인 교육지원」포함 권고 반영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 단체 육성·지원의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·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을 지원 하고,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▪축▪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및 공급 할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며,

- 안 제4조에는 농어업인 및 단체에 행·재정적 지원 사업으로 「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,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,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, 농산물 홍보·판매지원, 토양환경 개선사업,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사업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,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·훈련 및 농어업 경영기법 개선,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판촉·홍보 활동 지원,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,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」의 유형별로 분류(제1호에서 제11호)하여 세부 보조사업명은 별표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조금의 심의, 보조사업 관리, 성과평가 반영 의무화 등 보조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목적사업의 타당성 검토, 사업자 선정, 현장 확인, 집행, 정산,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